위해성평가연구센터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생화학방어에 관한 관련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, 산학협력, 인력양성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실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명칭 및 소재) 본 연구센터는 호서대학교 위해성평가연구센터(이하"연구센터"라 한다)라 칭하며, 호서대학교(이하 "대학교"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 3조 (사업) 본 연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생화학무기 방어를 위한 연구
2. 산·학·연 협동 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
3. 세미나, 학술회의 개최 등 각종 연구진흥 사업 수행
4. 기술지도,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 사업 수행
5. 국내·외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과 제공
6. 산업체 기술인력의 수탁교육
7.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수행
8. 기타 연구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

제 2 장 조 직

제 4조 (조직) 연구센터에는 각종 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생물탐지체계 연구팀
2. 생물독성 분석 및 제어기술 연구팀
3. 독성가스 확산 모델링 및 분진분석제어 연구팀
4. 방호소재 및 벤처사업화 연구팀
5. 대테러 피난시스템 연구팀
6. 생물방어 산학운영위원회

제 5조 (구성) 연구센터에는 아래와 같은 구성원을 둘 수 있다.

1. 센터장 : 1명
2. 산학위원장 : 2명
3. 연구팀장 : 5명
4. 사무장 : 1명
5. 연구원 : 약간 명
6. 행정보조원 : 약간 명
7. 조교 : 약간 명

제 6조 (임명) ① 센터장은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각 산학위원장 및 연구팀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각 사무장, 연구원, 행정보조원 및 조교 등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 7조 (임무) ①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

② 각 산학위원장 및 연구팀장은 관련 부서의 연구와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③ 사무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3 장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

제 8조 (제 위원회) 연구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
   가.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, 연구방향의 설정, 예·결산 및 사업계획, 기타 중 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 나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 고 위원은 각 산학위원장, 각 연구팀장, 사무장 및 학내 외 전문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다.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   라.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마.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야 한다.
2. 자문위원회
   가. 센터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나.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·경제단체의 장, 관련 산업계의 인사 및 국내·외 교육 기관과 연구소의 장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5.09.01).
   다.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운영 및 재정

제 9조 (재정) ① 연구센터의 재정은 각종 지원금, 연구비, 용역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②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0조 (재산의 귀속) 연구센터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한다.(조변경, 개정 2015.09.01)

제 5 장 폐 소

제11조 (폐소) 본 센터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)

제 6 장 보 고

제12조 (보고)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   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 7 장 보 칙

제13조 (준용) 연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제14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시행세칙)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